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'21.3.12일 조간부터</b>	<b>배포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<b>담 당 자</b>	류 성 재 사무관 (02-2100-2652)		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7580)		이 정 두 팀장 (02-3145-7616)		

제 목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·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(Chinese wall)가 도입됩니다.
-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,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,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.
-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.
-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.

**I. 개 요**

□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\* 및 그간 발표한 대책\*\*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(최운열 의원, '20.5월)  
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(이용우 의원, '20.12월)

\*\* 규제입증위원회('20.7월),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('20.11월) 후속조치

## II. 주요 개정내용

### 1.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(§ 50) \* 별첨 ‘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’ 참고

□ (추진배경)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(20.5월, 최운열 의원)되었습니다.

-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,
  - 교류차단대상 정보,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,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(개정내용) 이에 따라, 시행령 개정안에서는,

※ 금융위·금감원, 금투협, 국내외 금융투자회사,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‘차이니즈월 T/F’ 구성·운영(’20.11월 ~ ’21.2월)

#### ①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, 고객자산 매매·운용 등에 관한 정보\*로 규정하겠습니다.

\*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·소유현황 정보, 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재산·신탁재산 구성내역·운용 정보로 하되,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

#### ②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<sup>i)</sup>, 차단 방법·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<sup>ii)</sup>,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·대응 방안 관련 사항<sup>iii)</sup>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겠습니다.

- \* i) 차단대상정보 식별·설정에 관한 기준·방법,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(직무·부서·계열회사 등), 교류차단대상 정보별/부문별 책임자 지정
- ii) 정보교류 차단 및 예외적 교류 기준·요건·절차(法), 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방법, 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시 기록 작성·유지
- iii) 이해상충 우려 거래의 특정·유형화, 감시·매매제한 금투상품 목록 마련·유지 및 상시적 감시, 공동점포 설치·운영시 정보교류 차단 필요사항

#### ③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,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.

#### ④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·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## 2.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(§ 45, § 46)

□ (추진배경) 개정 법(‘20.5월, 최운열 의원)은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 통제업무(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시에 한함)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.

□ (개정내용) 이에 따라, 시행령 개정안에서는

-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**준법감시인 업무, 내부 감사업무, 위험관리업무, 신용위험 분석·평가업무\***로 하고,

\* 현행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내용과 동일

-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**사후보고\***로 전환함\*\*으로써,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

\*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보고 →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

\*\* “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”(‘19.5월) 후속조치

## 3.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이하, 종투사) 신용공여 기준 설정(§ 77 5)

□ (추진배경) 개정 법(‘20.12월, 이용우 의원)은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% 이상 지분을 소유·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,

- ① 시행령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는, ‘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’ 해외 현지법인 관련하여 ‘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’의 기준과,

- ②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였습니다.

□ (개정내용)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

- ① ‘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’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(子法人)이 50% 이상 소유·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(孫子法人)\*으로 하고,

\* 신용공여가 既허용 중이던 非종투사의 ‘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’의 내용과 동일

- ② ‘신용공여 한도’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,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,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%,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%로 설정하겠습니다.

## 5. 기타 제도 개선 추진

### ①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(\$68 ⑤4의2, §387의2)

- (추진배경)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,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(이하, 중복청약)를 제한하겠습니다.

\* “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”(’20.11월)

- (개정내용) 증권금융이 공모주 **중복청약 확인 시스템**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**제도적 근거\***를 마련하겠습니다.

\*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·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**중복청약 여부를 확인**하도록 하고,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**중복배정\***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\*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

### ②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·절차 규정(\$44).

- (추진배경) 개정 법(’20.5월, 최운열 의원)은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 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되,

-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**제한·시정명령 부과근거**를 마련하고, **보고받은 겸영업무(제한·시정명령 부과업무 포함)**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, 시행령에서 그 **공고방법·절차**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.

- (개정내용)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**보고회사 명칭**, 겸영업무의 **보고일자·개시일자** 및 **업무내용**에 대해 공고하고,

- **제한·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·사유**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\* 既운영중인 부수업무 관련 공고방법·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

### ③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(§10 ③, §61 ①).

\* 이하 ③~④는 “규제입증위원회”(20.7월)에 따른 후속조치

- (추진배경)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\*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만 인정함으로써,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

\* 일반 법인(금투자상품 잔고 100억 이상) 등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표시, 투자자가 계약서류 수령 거부 의사 표시 등

- (개정내용)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, **전화·팩스·전자우편** 등도 허용함으로써,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### ④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 (§176의 9)

- (추진배경)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**우리사주조합**(이하, 조합)에 공모물량 20%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어,

- 조합이 20%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,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.

- (개정내용) 조합이 사전에 **‘20% 미만의 배정을 희망’**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**의무배정 예외**를 인정하겠습니다.

※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

## III. 향후 계획

-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~4.20일), 규제심사, 법제심사 등을 거쳐, '21.5.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 별첨 1.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

### 2.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문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